

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24,468,418	18,734,053
일반회계	546,043,366	16,381,301
특별회계	78,425,052	2,352,752
기타특별회계	78,425,052	2,352,752
상수도특별회계	20,640,290	619,209
청사건립특별회계	20,031,331	600,94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768,092	23,043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235,883	7,076
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	36,749,456	1,102,484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없다".

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,362,624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6,1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